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의 정의와 의미

“현장실습”은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상호 밀접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 수행(직무 기초 교육 포함) 기회와 보상 제공을 통한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은 직무수행 참여를 통해 전공과 관련된 지식·기술·태도 등 직무능력 제고와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관련 현장 직무교육 실현 등

학교·학생·실습기관의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의 공동 계획 및 지도하에 실시되는 실습기관의 작업 현장 환경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연장된 경험학습

ERICA캠퍼스 현장실습 : E-WIL

- ERICA캠퍼스 현장실습(E-WIL, ERICA campus - Work Integrated Learning)이란?
 - 우리나라 현장실습은 1906년 북미권 대학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대학의 산학협동교육인 Co-op(Co-operative Education) 모델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Co-op은 일통합학습 WIL(Work Integrated Learning) 또는 일기반학습 WBL(Work Based Learning) 형태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모델입니다.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는 산학협력에 기반하는 현장실습 발전에 강한 의지(WILL)를 표방하기 위해 E-WIL (ERICA campus - Work Integrated Learning) 이라는 교육과정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상호 역할과 유의

현장실습 참여 주체간 역할



현장실습의 유익(필요성)



현장실습 운영 근거 / 과정 / 절차

현장실습 근거 법률 및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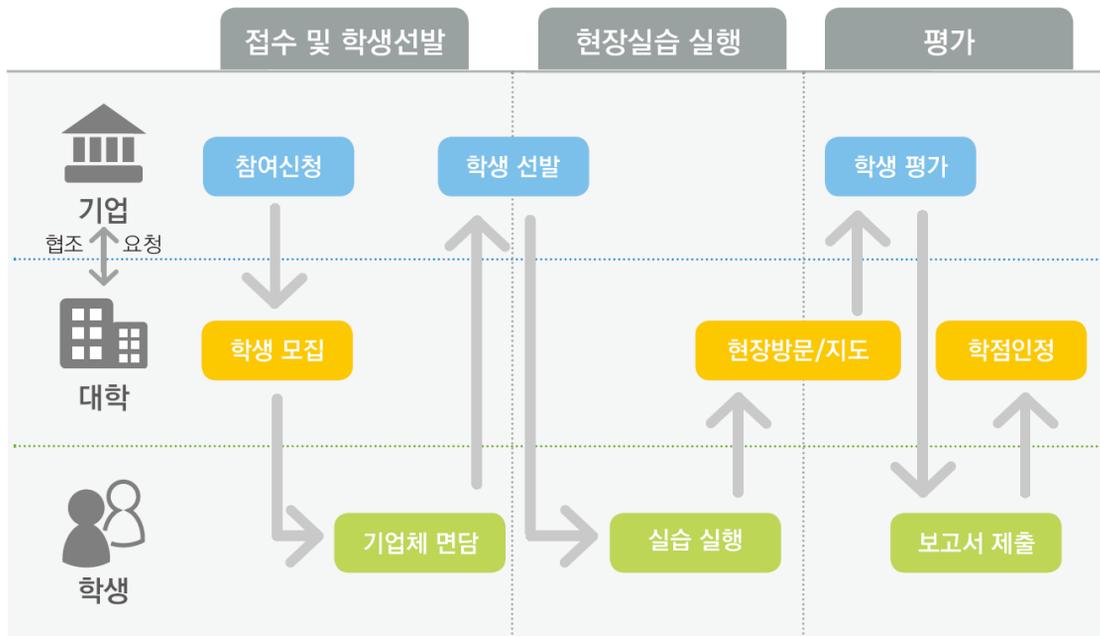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1-000호)(2021.05.00 개정)
- 한양대학교 학칙 및 현장실습 시행세칙, 현장실습 운영 내규

현장실습 운영 과정

구분	시행학기	수행기간	참여 조건
단기 과정	계절제 현장실습 하계방학 / 동계방학 (6월말/12월말 시작)	최소1개월 최대2개월	[기관] •[소재지] : 수도권 *지방의 경우 숙식제공 우대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의 75% 이상 - (2021년 기준) (권장) 월 1,400,000원 이상 (필수) 월 1,366,860원 이상
중기 과정	학기제 현장실습 선택형 4+1학년제 1학기 / 2학기 (3월초/9월초 시작)	최소3개월 최대4개월	
장기 과정	단기+중기 하계~2학기 / 동계~1학기	6개월+	[학생] •3~4학년 •기타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사항

- ※ 선택형 4+1학년제는 **전공부실화를 방지**하고 기존의 수업학기를 방해하지 않는 실습학기를 추가하여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임(참여학생은 등록금 면제)
- ※ 동계방학 현장실습의 경우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3학년 진학예정자부터 참여 가능함
- ※ 실습지원비 외 대학 지원금 : 대학에서 실습일 1일 기준 2만원 내외 지원금
 - **열정페이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월기준 대학 45만원 + 기업 (권장)140만원 = 185만원/월 이상 기준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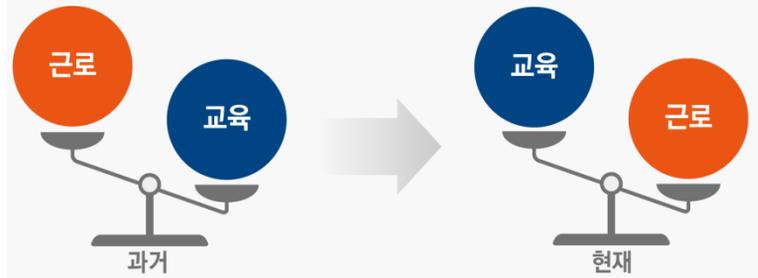
현장실습 운영 절차



주요 유의사항

현장실습에 참여하시기 전에...

-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교육과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실시되는 특성**에 따라 **교육과 근로**가 혼재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2016.02.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현장실습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또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현장실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및 현장실습 고시 주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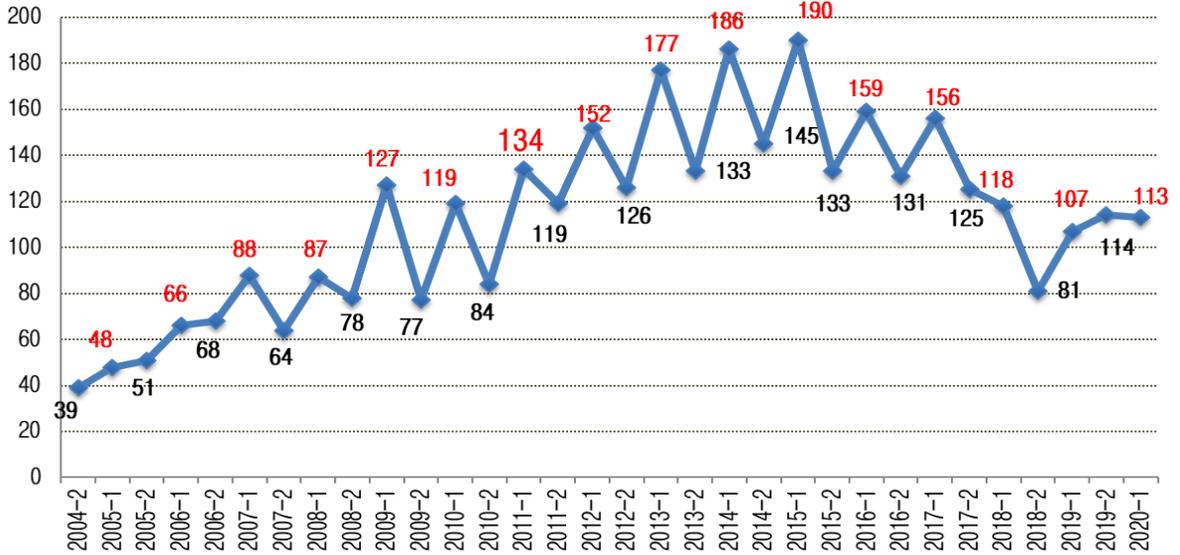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2016.02.01) 시행에 따라 현장실습, 인턴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운영 형태를 기반으로 근로자 판단여부 적용(아래 주요 기준 3가지)
 - ①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 ②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 ③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 실습지원비(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 **의무 지급 기준(연장실습 시간 포함)**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필수 제출(제출된 운영 계획의 임의 변경 실시 금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중요 기준

- 1) **실습지원비 의무 지급** : 3페이지 현장실습 유형별 기준 참조 바랍니다.
- 2)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현장실습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인 (별첨)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의 구체적 작성이 필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별첨)계획서 내 ‘**실습직무**’에 해당하며
 - (별첨)계획서는 일반 수업의 수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실습의 근로문제를 예방하고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첨)계획서 내 ‘**실습직무**’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실습기관**에서는 참여 학생을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하여야 합니다.
 - ***대학에서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저희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상의 후 참여 바랍니다.

현장실습 운영 참여 기관

현장실습 참여 기관수(학기별)



- 약 300여 개의 협력기관과 현장실습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별 참여 기관 상이 -

현장실습 대표 참여 기관



